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-431호

2025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

2025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, 지원규모 및 대상, 선정 기준, 사업신청 구비서류,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

1. 사업의 목적

- 국적선사의 친환경선 신조 지원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운·조선 상생 기반 구축 지원
- **2. 신청기간**: 2025.2.26.(수) 09:00부터 ~ 2025.5.9.(금) 18:00까지(상시접수)

3. 지원규모 및 대상, 선정 기준

- (지원규모) 외항해운 활성화 효과 및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'25년 예산(230.5억원)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(지원대상)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, 전문기관(KOMSA)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
- (선정기준)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(붙임1)에 따름

4. 지원대상자 의무사항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조선소와의 친환경선박 건조 「선박 안전법」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「친환경선박 인증규칙」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,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
 - *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동 지침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 친화적 선박 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없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
- ※ 지원대상자 의무 불이행 시 선정 취소

5. 사업신청 구비서류

- 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1부(붙임4 참조)
- ② 기업 소개 및 비전 1부(양식 자유, 5페이지 이내)
- ③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1부(붙임5 참조)
- ④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 인증서 1부(붙임 6 참조)
- ⑤ 연관산업 기여도 1부(붙임7 참조)
-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8 참조)
- ⑧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(붙임3 참조)
- ⑨ 노사합의서 이행 확인서(붙임9 참조)
- ⑩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

6. 신청 방법

-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, 알림·뉴스 → 공지사항), 한국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(www.kobc.or.kr, 홍보센터 → 공지사항)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
- 접수처 :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관리부 정책지원팀
 - 주소 : (48120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, C1동 7층 (우동, 해운대아이파크)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
 - 전화 : 051) 795-1623
-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 - *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전자우편(e-mail)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.

7.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

- 신청서 접수(사업자→해양진흥공사) : 2025.2.26.(수) ~ 2025.5.9(금)
- 신청서 사실확인(해양진흥공사) : 2025.2.26.(수) ~ 2025.5.9.(금)(상시)
- 후보자 선정 심사(심사위원회) : 2025.5월 중(잠정)
- 지원대상자 선정·통보 : 2025.5월 말(잠정)
 - *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8. 기타 사항

-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후보자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(044-200-5717)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(051-795-16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(붙임) 1. 신조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(지침 별표 1)
 - 2.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(지침 별표 2)
 - 3.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(지침 별표 2의1)
 - 4.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(지침 별지 제1호 서식)
 - 5.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(지침 별지 제2호 서식)
 - 6.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(지침 별지 제3호 서식)
 - 7. 연관산업 기여도(지침 별지 제4호 서식)
 - 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지침 별지 제5호 서식)
 - 9. 노사합의서 이행 확인서(지침 별지 제6호 서식)

(붙임 1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 1]

신조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

| 인증등급 | 보조율 상한 |
|------|--------|
| 1등급 | 10% |
| 2등급 | 9% |
| 3등급 | 8% |

^{※ 「}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」 및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참조

※ 또한,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, 사업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(붙임 2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 2]

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(제9조제4항 관련)

| 선박 | 심사항목 | 배 점 | | | 심 사 | 기 준 | | | | | | 평 7 |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(40) 점수 | 선박 | | □ 신조 선박 | 친환경 인증 | 등급별 | 점수((| 계비인 | 증서 등 | 등급) | | | | |
| 기압 | | 40점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실도 (20) | | | 점수 4 | -0 | 37 | | 34 | | | | | | |
| 사업계획의 주실성 이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| 건실도 | 20점 | | - | 평가 (발 | 5표2으 | 1) | | | | | | |
| 사업계획 타당성 (20) 20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4 3 2 1 | | | □ 사업계획의 | 충실성 | | | | | | | | | |
| 사업계획 타당성 (20) | | | o 평가항목별 | 사업계획의 | 적정성 평 | 경 가 | _ | | | | | | |
| 대한성 (20) | | | į | 평가항목 | | 으스 | | | | 교저 | | | |
| 지원급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, 4 3 2 1 전가내역서의 타당성 4 3 2 1 전가내역서의 타당성 4 3 2 1 전박건조 공정계획 4 3 2 1 전략건조 공전계획 4 3 2 1 전략건조 공전계획 4 3 2 1 전략건조 공전계획 4 3 2 1 전략건조 유전기업 전략 제 전략전환 제 5 조합평가 전략권교육 8 7 6 5 3 4 3 전략권교육 8 7 6 5 4 3 전략권교육 1 2 전략권교육 2 등급 1점) | 1 | LTOO | 제출 자료의 | 충실성 | | | | | | 00 | | | |
|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4 3 2 1 | | 20섬 | 자기자금 조 | 달방안 | 여 평가) | 4 | 3 | 2 | 1 | | | | |
| 변관산업기여도 (20) | | | 선가내역서의 | 의 타당성 | , | | | | | | | | |
| 변관산업기여도 (20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연관산업 기여도 (20) | | | | 푹 기어프 | <u></u> 한 계 | 4 | 3 | | 1 | | | | |
| 연관산업 기여도 (20) | | | | N 및 선급 7 | | 등 종 | 합평가 | | | | | | |
| 선원고용 8 7 6 5 5 4 3 1 1 1 1 1 1 1 1 1 | 여과사어 | | | | | | | 5~50%) | 미흡(2 | 5% 미만) | | | |
| (20) | | 20전 | | | | . 3 , 6 , | | | _ | | | | |
| 선급 가입 6 5 4 3 해사안전법(제57조의2)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(1점) | | 20 1 | | 6 | 5 | | 4 | | | 3 | | | |
| □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선사 (1등급 2점, 2등급 1점) □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사와의 장기계약 체결에 의해 건조 예정인 선박(2점) □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에서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(3점) □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(3점) □ 중소형 선사(10점) *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| 6 | 5 | | 4 | | | 3 | | | |
| (1등급 2점, 2등급 1점) □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사와의 장기계약 체결에 의해 건조 예정인 선박(2점) □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에서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(3점) □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(3점) □ 중소형 선사(10점) *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□ 해사안전법(| 제57조의2)이 | 따른 ㅎ | H사안 | 전우수 | 나업자(| (1점) | | | | |
| 가점 □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사와의 장기계약 체결에 의해 건조 예정인 선박(2점) □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에서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(3점) □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(3점) □ 중소형 선사(10점) *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□ 우수 선화주 | 기업 인증을 | 받은 선 | 선사 | | | | | | | |
| 마정인 선박(2점) □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에서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(3점) □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(3점) □ 중소형 선사(10점) *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(1등급 2점, | 2등급 1점) | | | | | | | | | |
| 기점 - | | | □ 우수 선화 | 두기업 인증 | 화주사. | 와의 | 장기계 | 약 체 | 결에 9 | 의해 건 | <u> 1</u> 조 | | |
| 가점 - □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(3점) □ 중소형 선사(10점) *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예정인 선박 | 낚(2점) | | | | | | | | | |
| | | | □ K 얼라이언스 | 참여선사에서 | 네 협력항 5 | 르에 투 | 입하기 | 위한 신 | <u>l</u> 조선 긴 | <u>년</u> 조 시(3 | (점) | | |
| □ 중소형 선사(10점) *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가정 | _ | □ 국가필수선 | 박 운영 선시 | l·(3점) | | | | | | | | |
|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' | | □ 중소형 선시 | h(10점) | | | | | | | | | |
| □ 중견선사(5점)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| – . – | • — | 천억운 | ! 미만 | 및 직 | 전 3개 | 년 매출 | 들의 | | |
| *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| | | | 평균이 800억원 이하인 선사 | | | | | | | | | |
| 원칙으로 함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` ' | | | | | | | | | | |
| □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(3점)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□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(5점)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_ , _ | | | | | | | | | | |
| 감점 - □ '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의서' 미이행 기업(5점) | <u>가</u> 저 | _ | | | | | | 1려 회 | 부르 | 의하 ㄴ | - <u></u> | | |
| | | | | | - | 근포 | 200 |) 기 딕 | - 2 | пе д | -^1 | | |
| | 총 점 | 100점 | <u> </u> | , 0 1 1 1 1 1 1 | <i>-,</i> - | | | | | | \neg | | \exists |

[※] 총점이 동일할 경우 중소형 선사, 신조선박 친환경도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업건실도, 연관산업 기여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

(붙임 3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 2의1]

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

□ 기업 건실도(10점)

- 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 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(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)
 - *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, 나이스평가정보, 한국기업평가,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 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
- ※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(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)

(단위: 점)

| | | | 신용평가등급 | <u> </u>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KIS신용 평가모형 | 회사채 | 기업어음 | 기업신용평가등급 | 평 점 |
| 신용평가 구간 1~2 | AAA AA+, AA0, AA- A+ A0 A- | A1 A2+ A20 A2- | AAA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) AA+, AA0, A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+, AA0, AA-에 준하는 등급) A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+에 준하는 등급) A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) 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-에 준하는 등급) | 20 |
| 신용평가 | BBB+ | A3+ | BBB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+에 준하는 등급) | |
| 구간 | BBB0 | A30 | BBBO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) | 18 |
| 3~4 | BBB- | A3- | B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) | |
| 신용평가 | BB+, BBO | B+ | BB+, BBO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+, BBO에 준하는 등급) | 16 |
| 구간 5~6 | BB- | В0 | 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-에 준하는 등급) | 16 |
| 신용평가 | B+, B0, B- | B- | B+, BO, 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+, BO, B-에 준하는 등급) | 4.4 |
| 구간 7이하 | CCC+ 이하 | C 이하 | CCC+ 이하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+에 준하는 등급) | 14 |

- ※ ① 신용평가등급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 - ② '신용평가등급 확인서'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.
 - * KIS 신용평가모형: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(NICE신용평가정보)

(붙임 4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1호서식]

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

| 접수번호 | | | 접= | 수일자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| 업체명 | | | | | 사업자등록 | 번호 | | | |
| | 소재지 | | | | | 전화번호 | | | | |
| 신청자 | 대표자성명 | | | | | 생년월일 | | | | |
| | 자본금 | | 만원 | | 선박보유량 | 초 | † | G/T | | |
| | | 건조선박 G/T 선종 | | | | | | | | |
| | | 총 건조비 | | 만원 | 건조계 | 약일 | | | | |
| 시원 | | 건조일정 | ~ | | 건조조 | 선소 | | | | |
| 신청 | 건조계획 | | | | 연도별 자금 | 조달 계획 | | | | |
| 내용 | | 건조자금조달 | 1차년 | | 2차년 | 3차년 | | 자기자금 조달방법 | | |
| | | 총계(@+b) | 만원 | | 만원 | | 만원 | | | |
| | | 대출금(@) | 만원 | | 만원 | | 만원 | | | |
| | | 자기자금(®) (보조금 포함) 만원 만원 | | | | | | | | |
| 「글로발 | ! 저탄소선 ! | 박 정책 대응 지원 | 일사업 시행지침」; | 제 7조 | 트에 따라 위외 | - - 같이 신청 | 합니디 | | | |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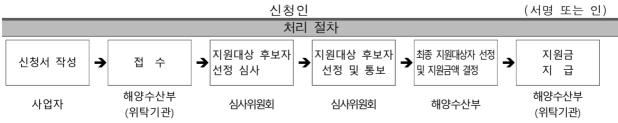
해양수산부장관(위탁기관장) 귀하

첨부 서류

- 1.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(별지 제2호)
- 2.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(별지 제3호)

신청정보 이용 동의서

본인은 사업 위탁기관이 사업 신청정보를 통하여 신조 금융 지원(사전상담, 지원범위 산정)등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(붙임 5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2호서식]

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

1. 사업의 개요

 \bigcirc

| 2 | 치환경선박 | 거ㅈ | 디사 | 서비 |
|----|-------|----|----|-----|
| ۷. | 신완성인틱 | 行企 | 내상 | ᄼᄓᄆ |

| 주요 | 제워 | 서명 | 선종 | GT(DWT), | | 소유주 | 치화견 | 정도 | 듣 | | |
|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1 | 세면, | L'O, | L 0, | ar(DWI), | ┪┑, | - π г, | 220 | \circ \bot | 0 | | |

3. 친환경선박 적용기술

※ 아래 해당사항에 "v"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.

| | 취ᅬᆺᆌ | □ 화석연료 | □ LNG | □ LPG | □ 배터리 | |
|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|
| | 추진시스템 | □ 암모니아 | □ 수소 | □ 하이브리드 | □ 기타(|) |
| 적용 | 대기오염물질 | □ 질소산화물 | 배출저감설비 | □ 입자상물질 | ! 배출저감장치 | |
| 기술 | 저감설비 | □ 황산화물 배 | 출저감장치 | | | |
| | 기타 | □ 기술의 명칭 | : | | | |

3. 친환경선박 신조 계획

| | 신조조선소, 주소, 현황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신조 계획 | 신조가격 |
| | 신조계약일, 신조일정(7번) |

4. 선박 투입항로 계획

(단위 : 명, 톤)

| 사업 종류 | 선 박 명 | 항로 | 연간 운송 | 능량(예상)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лн оπ | | 8 五 | 화물 종류 | 운송량 |
| | | | | |

5. 소요자금 내역

(단위 : G/T, 척, 만원)

| 선박 종류 | 규 모 (GT) | 건조 척수 (@) | 건조 가격 (ᠪ) | 총 투자액 (a×b) | 타인지본 | 시시자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|
| | | | | | | | |
| 계 | | | | | | | |

6. 자기자금 조달방안

 \bigcirc

7. 선가 납입 계획

| 회차 | 일정 | 비율 |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1회차 | | | |
| 2회차 | | | |
| 3회차 | | | |
| 4회차 | | | |
|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| | | |
| | 합계 | | |

8. 선박건조 공정 계획

| 선박건조 공정 계획 | 일 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○ 계약 체결 | |
| ○ 강재절단(Steel Cutting) | |
| ○ 용골거치(Keel Laying) | |
| ○ 진수(Launching) | |
| ○ 인도(Delivery) | |

(붙임 6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[별지 제3호서식]

|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|
| 상 | 호(사업장 명칭) | | | | | | |
| 성 | 명(대 표 자) | | | 사업자등 | 록번호 | | |
| 주 | 소 | | | | | | |
| 선 | 선 명 (용도) | | | | | | |
| | 선박번호 | | | | | | |
| | 설비구분 | | | | | | |
| | 적용기술 | | | | | | |
| | 규 격 | | | | | | |
| | 수 량 | | | | | | |
| | 제조번호 | | | | | | |
| 예비 | 인증등급 | | | | | | |
| 인증사 항 | 특기사항 | | | | | | |
| 0 | | | | 조 건 | | | |
| | 1. 예비인증을 받 | ·아 「환경친화적 2조제2항에 따른 | | | | | |
| | | ^{2도세2} 8에 떠든 험부서류의 기재시 | | | . , – | | ᆝ에 게 ᆯ |
| | 2. 「환경친화적 | | | | | | 어느 하 |
| |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| | | | | | |
|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합니다. 년 월 일 | | | | | | | |
| | 한 국 | · 해 양 교 통 안 [:] | 전 공 단 | 이 사 장 | 직인 | | |

(붙임 7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[별지 제4호서식]

연관산업 기여도

□ 선원고용, P&I 및 선급 가입현황 등 종합평가

(단위 : 명, 척)

| 선원고용 | | P&I | 가입 | 선급가입 | |
|------|-----|-----|----|------|----|
| 내국인 | 외국인 | 국내 | 국외 | 국내 | 국외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- ※ P&I 가입은 Full Term 기준으로 작성(Crew Only는 제외)
- ※ 국내외 선급에 이중으로 가입한 선박은 국내로 작성

(붙임 8)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[별지 제5호서식]

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• 이용 동의서

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,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집 · 이용 목적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▶ 필수항목 • 개인 및 선사·선박 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 •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(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) 수집 · 이용항목 ▶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• 세금계산서 등 지원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• 예금주: 계좌번호, 입금은행, 예금주명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유 · 이용기간 건조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.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지원대상자 심사,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익 내용 거부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,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•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수집 · 이용 동의 여부 필수정보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 선택정보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| 년 | 월 | 일 |
|---|---|---|
| _ | | |

<u>(신청인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</u>

해양수산부장관(수탁기관장) 귀하

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[별지 제6호서식]

노사합의서 이행 확인서

선사명:

본 선사는 「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 (2023. 11. 6.)」 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직급:

성명: (인)